

##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

#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건명 : **인천 연수구 함박피로 226 인천우체국 1층 일부 사용허가**  
 나. 대상재산

재산의 위치	사용면적(㎡)	용도	연간사용료 예정가격	입찰집행(개찰)		비고
				장소	일시	
인천 연수구 함박피로 226 인천우체국 1층 일부	건물 : 154.62㎡ (전용 : 99.52㎡)	<b>제1종근생 (소매점)</b>	<b>16,665,000 원</b> (부가세 포함)	경인지방우정청 집행관 PC	2016.01.12 10:00	

#### 유의사항

※ 희망업종 인·허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확인은 입찰참여 전 사용허가자가 하여야 하며, 낙찰 후 사업자등록 관련 인·허가를 못 받은 데 대하여 경인지방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(건축물 용도변경,사업장 허가 등)

다. 허가기간 : **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**

라. 입찰일정

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	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제출일시	입찰집행(개찰)일시	입찰서 제출서	개찰장소
2016.01.04.10:00 ~ <b>2016.01.11.16:00</b>	2016.01.04.10:00 ~ <b>2016.01.11.16:00</b>	2016.01.12.10:00	전자자산처분시스템 ( <a href="http://www.onbid.co.kr">http://www.onbid.co.kr</a> )	경인지방우정청 집행관 PC

※ 국유재산 사용계획서는 우리청 방문접수 또는 FAX(0505-005-1251)접수 가능함.  
(팩스 송부 시 사전 전화 후 팩스송부하고 도착 여부 확인)

마. 입주시기 : 낙찰일로부터 3개월 이후(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)

- 1) 낙찰자 결정 후 임대공간 확보공사 예정 : 불임 도면 참조  
 ※ 임대 공간은 현재 구획만 된 상태로, 낙찰 후 도면과 같이 공간을 만들 예정임
- 2) 임대공간 확보공사 후 실제 공간이 도면의 공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.  
 ※ 실제공간의 사용면적이 도면상의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사용료가 조정될 수 있음  
 ⇒ 최종 조정사용료 = 낙찰금액의 ㎡당 사용료 × 최종사용면적

바. 사용목적(업종)의 제한

- 1) 혐오·기피시설이 아닌 건축법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건물과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공서양속(公序良俗)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
- 2) 우체국 영업 및 운영에 방해가 없고, 우체국 내 사용허가 받은 타 사용인과 업종의 중복이 없으며 우체국 및 건물의 안전·미화·보안유지상 문제가 없는 업종
- 3) 영업장에서 금주·금연, 식품을 제조·가공하지 않고 가스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 조리 또는 완제품 판매가 가능한 업종
- 4) 대상재산 외부에 별도의 영업공간(좌판, 파라솔 등)을 설치·운영하지 않는 업종
- 5) 가맹사업체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(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)에 의거,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

### 2. 입찰방법

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,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이하“온비드”라 한다. <http://www.onbid.co.kr>)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.

### 3. 입찰참가 자격

(이하 관련법령 검색은 법제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oleg.go.kr>) 참조)

- 가. “온비드”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
 나.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자  
 다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)의 자격을 갖춘 자  
 라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마. 입찰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(체납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됨)

바. **동 국유재산을 사용할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목적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은 후 입찰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, 사전승낙 없이 입찰한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.**

(연락처 : ☎ 031-8014-3125, 3118 FAX : 0505-005-1251)

※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양식은 별도 첨부

### 4. 입찰서 제출

- 가. 입찰서는 반드시 “온비드”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 나. 입찰서의 제출은 “온비드”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“온비드”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,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“온비드”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  
 다.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  
 라. **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.**

### 5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

- 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(입찰금액)의 100분의5(5%)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“온비드”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“신한은행” 또는 “하나은행”, “우리은행”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,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 
 ※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 
 나.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로는 “신한위탁계정” 또는 “하나위탁계정” 또는 “우리위탁계정”입니다.  
 다. 입찰보증금 납부 시 “온비드”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 (분할 납부 불가)하여야 하며,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.  
 ※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.  
 ※ 입찰보증금을 ①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, ②입찰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, ③보증금을 분할 입금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 
 라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.

## 6. 낙찰자의 결정방법

- 가.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“온비드”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.
- 나.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 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## 7. 낙찰자의 제출서류

- 가. 주민등록등본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 1부.
- 나.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1부.
- 다. 주민등록증(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) 사본 1부.
- 라.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.
- 마.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.(양식 제공)
- 바. 각서 3부.(양식 제공)

## 8. 입찰의 무효

- 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(입찰무효)에 의합니다.
- 나.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.

## 9.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

“온비드”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“온비드”상의(공매공고- 연기공고, 취소공고)게재에 의합니다.

## 10.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

- 가.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**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** 합니다.
- 나. 낙찰자는 계약대금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.

## 11. 사용료 결정방법 및 납부 등

- 가. 경쟁 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.
- 나.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**매년 선납**하여야 합니다.
- 다.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.  
**100만원 이상 분할납부시 연간사용료의 50% 이상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.** 분할납부 및 보증조치 등에 관하여는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(☎031-8014-3125)에 문의합니다.
- 라.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당해 연도 재산가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  
사용요율 =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연간 사용료 /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
- 마. 사용인은 경인지방우정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건물 손해(화재)보험에 가입하고, 그 증서를 경인지방우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인지방우정청이 부보한 경우에는 경인지방우정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합니다.  
(단, 건물이 아닌 동산재산에 대한 보험은 사용인이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)
- 바.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(전기료, 상·하수도요금 등)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, 개별로 납부하지 않은 부과금은 우체국에서 산정한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사. **예정가격(사용료)이 산출오류 등으로 부족 징수되었을 때에는 추가고지 가능합니다.**

## 12. 허가·취소·철회 등

- 가. 허가권자는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1)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(사용료 납부)의 규정을 위반한 때
  - 2) 당해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때
  - 3) 허위의 진술, 부실한 증명서류의 제시,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을 때
  - 4) 당해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한 때
  - 5) 기타 사용·수익허가에 따른 의무사항(보험가입, 부과금 납부 등)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나. 허가권자는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상기 조건 이외에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추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.

## 13. 설치 가능한 시설물 범위 및 각서 제출 등

- 가.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- 나. 기존 설치된 시설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다.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)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서,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.
  - 2) 기타 가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(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/2을 초과)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.
    - a.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
    - b. 전기, 수도,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
    - c. 주거용 시설물
    - d. 설치 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
- 라. 현 상태 이외의 가설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경인지방우정청 및 청사관리부서(인천우체국 협의)의 사전승인 후 사용인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마. **시설물 설치 시 사용인은 해당 시설물의 투자예상액(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비)의 20% 이상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, 경인지방우정청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- 바. 경인지방우정청에서 가설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또는 계약 해지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계약 체결 시 또는 시설물 설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14.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

- 가. **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입찰 참가 신청자는 반드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재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** 바라며, 또한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정한 사용허가조건, 국유재산법·국유재산법시행령·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·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사용허가 관련규정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, 경인지방우정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나. **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·전대할 수 없습니다.**

다. 사용인의 사용허가재산 점유,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, 허가,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사용인의 단독 책임으로 합니다.

라. 본 입찰의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.

마.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에 의합니다.

바.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조건,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**15. 기타**

가. 입찰 및 계약 관련문의

-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-55(탑동 909)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
- 전화번호 : (☎) 031-8014-3125, 3118

나. 입찰물건 안내 : 인천우체국(☎032-850-8181)

다. 전자입찰 이용안내 -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(온비드)  
홈페이지 <http://www.onbid.co.kr>, 전화번호: 1588-5321

라. 입찰에 관한 집행사항 : <http://www.onbid.co.kr>

- 입찰서 제출 여부 및 입찰 결과 : 나의 온비드 / 입찰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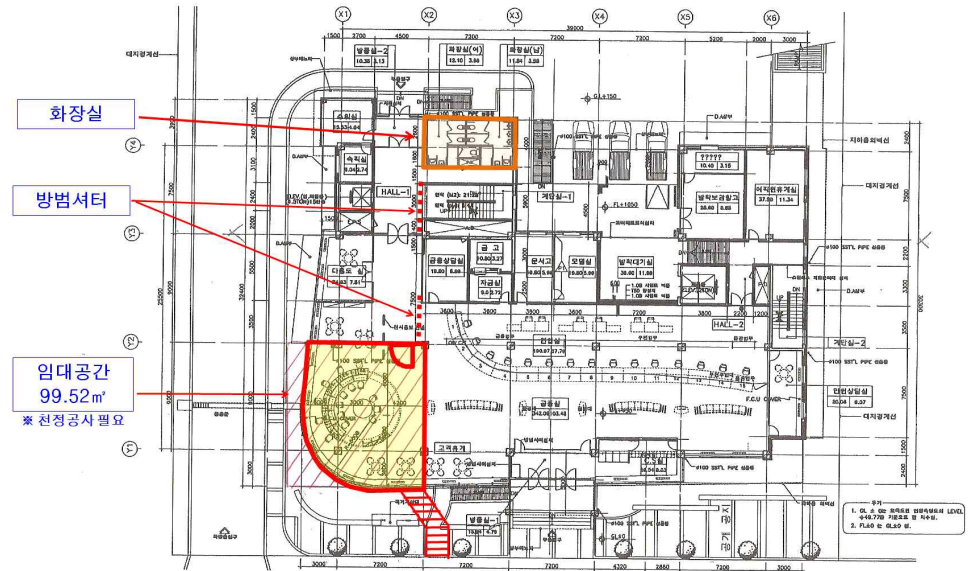
2015년 12월 31일

**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**

붙임

**임대 예정 공간 사진 및 도면(인천우체국 1층)**

임대 예정 공간 도면



\* 사용자가 대상공간 조성공사 후 실제 공간은 위의 도면과 소폭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청사 전면      임대 예정 공간

